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대상 스톱킹범죄 가중처벌〉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5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9. 06.
3. 회 부 일 : 2024. 09.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 하려는 것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3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18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u>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신설>	1. <u>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
<신설>	2. <u>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
<신설>	3. <u>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u>

현행	개정안
	<u>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른 19세 이상의 사람</u>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흉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성인 대상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할지 여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행 「형법」 및 「형사특별법」 중 동일 범죄에 대하여 성인이 대상인 경우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입법례¹⁾는 주로 성범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행위에

1) 「형법」 제287조에 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및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이 있음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아 일반적인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및 미성년자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가중처벌 되는 피해자의 연령 상한을 16세 미만으로 하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 연령과 관계 없이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므로 또래 청소년들 간의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이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미성숙하여 상대적으로 스토킹범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피해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적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자의 나이 등을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법률에서는 세부적인 나이 규정은 두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의견²⁾도 있음.
- 참고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가해자가 21세를 초과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하고,
-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하되 ① 가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②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 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2)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4. 5. p.388

또래 청소년들간의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중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사례〉

구 분		가해자	피해자	관련법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	미성년자	「형법」 제302조 ³⁾
미성년자 간음·추행		-	13세 미만	「형법」 제305조 ⁴⁾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19세 이상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⁶⁾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추행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성적 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	19세 미만	
	성적 행위 유인·권유	19세 이상	16세 미만	
	강간, 강제추행 등 그 밖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9세 미만	

3)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5)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회입법조사처⁷⁾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규정하는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인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7) 박소현, 「이슈와 논점: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2024. 6. 28.

8) 독일: 일반적인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독일 「형법」 제238조제2항제7호)

미국: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더 가중됨. 다만,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중한 결과 발생한 경우 제외)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킹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⁹⁾하고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¹⁰⁾하여 적절한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적용하지 아니함(미국연방법률 제18장제2261B조)

- 9) 독일 16세 미만, 미국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스토킹행위자의 연령 하한을 구체화하여 또래들간의 스토킹행위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10)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의 경우 휴기휴대의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을 설정할 것인지 혹은 휴기휴대 미성년자 스토킹행위와 휴기를 휴대하지 않고 이루어진 미성년자 스토킹행위를 구별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